
2021년 단체(임금)협약서

2022. 2. 14.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1년 단체(임금)협약서

[공통]

1.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년 기본급은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1유형 2,068,000원, 2유형 1,868,000원으로 한다.
 2.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근속수당 급간은 협약 체결월부터 38,000원으로하고, 2022년 회계연도부터 39,000원으로 한다.
 3. 2022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근속상한을 21년으로 확대한다.
 4.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과 특수운영직군의 명절휴가비는 체결일 이후 설날 및 추석에 각 700,000원으로 한다.
 5. 가족수당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시간비례 없이 지급하되 그 대상은 교육부 및 각 시·도별 현행 기준에 따른다.
 6.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 직종의 건강검진비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 ※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직종: 교육부 및 교육청 급여체계(기본급 및 처우개선수당 항목 전체)를 적용하는 직종

[직종]

【1유형 편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2.20.까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직종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임금 체계 1유형으로 편입한다.

- ① 거점영어체험센터전임강사·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광주)

② 장애유아지도사·전문상담사·사회복지사·학부모지원전문가(강원)

③ 교육복지사(경기 지자체 재원 제외)

- 학교 교육복지사(대구 상담복지사 포함)가 1유형에 편입할 경우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2021년도 1유형 기본급 2,04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수업무수당(서울 직무수당을 특수업무수당으로 변경)에 합산하여 2022학년도부터 특수업무수당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1유형에 미편입할 경우 2022 회계연도부터 기본급은 14,000원을 인상하고, 특수업무수당(또는 직무수당)을 월 10,000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1. 경기, 강원: 월20,000원

2. 전남: 월40,000원

3. 서울(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월110,000원

4. 대전: 월120,000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12조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복지사(프로젝트조정자, 교육복지조정자 포함)가 1유형에 편입할 경우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2021년도 1유형 기본급 2,04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22학년도부터 직무수당(시도 공통으로 기존 기관근무수당을 직무수당으로 명칭 변경)과 특수업무수당에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1유형에 미편입할 경우 2022 회계연도부터 기본급은 14,000원을 인상하고, 특수업무수당(또는 직무수당)을 월 10,000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1. 전북: 직무수당 월40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10,000원

2. 충남: 직무수당 월39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10,000원

3. 강원: 직무수당 월41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20,000원

4. 전남: 직무수당 월4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40,000원

5. 울산: 직무수당 월4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10,000원:

6. 세종, 광주, 대구: 직무수당 월49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10,000원

- 7. 경기: 직무수당 월49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20,000원
 - 8. 경남: 직무수당 월5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10,000원
 - 9. 서울: 직무수당 월50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110,000원
 - 10. 대전: 직무수당 월58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120,000원
- 임상심리사가 1유형 편입 시 직무수당(부산 월 300,000원, 전북 월 240,000원)을 지급하고, 1유형에 미편입한 경우 기본급은 현행을 유지 하되 상여금(부산) 및 가족수당(부산, 전북)을 지급한다.

- ④ 치료사(충남)
- ⑤ 낙동강학생교육원 교육지도사·학부모지원전문가(경남)
- ⑥ 수련지도원(경북)
- ⑦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강원, 경북)
- ⑧ 시스템유지관리원(전남), 1유형 편입 시 직무수당(신설)은 월 25만원 으로 지급한다.
- ⑨ 영어회화전문강사(부산, 인천) 단,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경력은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
- ⑩ 초등스포츠강사(서울, 인천). 단,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경력은 관내 공·사립 초등, 특수학교에서 초등스포츠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

【2유형 편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2.20.까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직종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임금 체계 2유형으로 편입한다. 단, 현행 대비 하락하는 금액(연간 지급 총액 기준)은 월할 계산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 ① 객실청소원·청사안내원(강원)
- ② 고객지원종사자·배식차운전원(인천)
- ③ 공공도서관야간안전원·수련업무실무원·통학차량안전요원(대구)
- ④ 사감(경남, 수익자부담 제외)

- ⑤ 사무보조·사서보조·안내원·운전원·조리원·통학차량보조원(경북)
- ⑥ 시설경비원·시설안내원·전화상담원(경기)
- ⑦ 시설(물)관리원(서울,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단, 서울의 직무등급체계는 유지
- ⑧ 매점관리원(경남, 교통보조비 폐지)
- ⑨ 주차관리원(인천, 경북)
- ⑩ 취업지원관(광주)
- ⑪ 콜센터상담원(서울, 강원) 단, 서울의 직무등급체계는 유지

【기본급】 다음 각 항의 직종 중 유형에 편입되지 않은 직종의 기본급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① 영어회화전문강사: 월 2,308,000원
- ② 학교운동부지도자: 월 28,000원을 인상하되, 월 2,000,000원에 미달하는 시도는 월 2,000,000원으로 한다.
- ③ 초등스포츠강사: 월 28,000원을 인상하되, 월 2,000,000원에 미달하는 시도는 월 2,000,000원으로 한다.
- ④ 다문화언어강사(서울): 월1,868,000원
- ⑤ 유치원단시간강사(충북): 시간급 20,400원
- ⑥ 통학차량보호탑승자(경남): 월1,868,000원
- ⑦ 구육성회(호봉제)
 1. 경북의 호봉 상한을 7호봉에서 8호봉으로 확대한다.
 2. 강원도의 호봉 상한을 6호봉에서 7호봉으로 확대한다.
 3. 경기의 20호봉 미만 호봉 제한자의 호봉 상한을 현행보다 1호봉 확대한다.
 4. 전북의 호봉승급 주기를 전보 및 인사교류를 전제로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5. 대전의 호봉 상한을 1호봉 확대한다.
 6. 전남의 호봉제 인정 경력 50% 이하(기준일: 2021.12.31.)인 자는 2022.3.1.자로 1호봉 추가 승급한다.

- ⑧ 특수운영직군: 월 1,868,000원(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특수운영직군이란 2019년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협약서 제2조 1과 같다. 단, 전북의 과학문화해설사는 제외한다.
 2. (서울) 2022회계연도의 특수운영직군 직무 1등급의 기본급은 2유형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한 직무등급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3. (광주) 미화원의 경우 정년 초과자만 적용한다.
- ⑨ 경북의 청소원·당직전담직원·문단속요원 중 기본급과 복지3종만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월 1,868,000원으로 한다.
- ⑩ 초단시간 시급제근로자: 2021년 시간급이 10,460원인 근로자의 시간급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10,990원으로 한다. 10,990원보다 높은 근로자의 시간급은 현행을 유지한다. 단, 경기도 이외의 생활임금 적용 시도는 제외한다.

【근속수당】 유형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 근속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2021 회계연도 근속수당을 1유형·2유형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근속수당 급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38,000원으로 하고, 2022년 회계연도부터 39,000원으로 한다.
- ② 2022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근속상한을 21년으로 확대한다.
- ③ 구육성회(제주)의 근속수당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현행에서 2,500원 인상한다.
- ④ 우포생태환경해설사(경남)의 근속수당 산정 기산일은 2018.3.1.부터로 한다.
- ⑤ 유치원방과후전담사(경남)는 2022.3.1.자로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경력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시간제기간제교사 경력을 포함한다.
- ⑥ 광주의 미화원(정년 미도래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속수당 급간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35,000원으로 인상한다.
- ⑦ 초등스포츠강사(부산)의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경력은 초등학교에서 초등스포츠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고 기존의 경력 산정 기산일을 폐지한다.

【급식비】 유형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 급식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통학차량보호탑승자(경남)·영어체험전담센터강사(경남의 무기계약직)의 급식비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월140,000원으로 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② 관현악단부지휘자(광주)의 급식비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월 140,000원을 지급하되, 타직종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명절휴가비】 유형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 명절휴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초등스포츠강사, 수상안전요원(경남), 대안교육전문가, 학습클리닉전문가, 진로교육사, 교육지도사, 방과후교육지원가, 다문화언어강사(서울), 관현악단부지휘자(광주), 순회보건강사·다문화교육전문가(강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강사, 수영강사(전북), 교육복지사(대구 상담복지사 포함), 통학차량보호탑승자(경남)·영어체험전담센터강사(경남의 무기계약직), 사감(수익자 부담 제외)의 명절휴가비는 체결일 이후 설날 및 추석에 각 700,000원으로 한다.

【정기상여금】 유형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 정기상여금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항의 직종의 정기상여금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단, 기존 금액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 현행을 유지한다.

- ① 운동부지도자: 연 900,000원 미만 지급 시도는 연 900,000원으로 인상(대전 제외)
- ② 과학문화해설사(전북) :연 500,000원
- ③ 초등스포츠강사: 연 900,000원 미만 지급 시도는 연 900,000원으로 인상
- ④ 영어회화전문강사: 연 900,000원 미만 지급 시도는 연 900,000원으로 인상
- ⑤ 통학차량보호탑승자(경남): 연 1,000,000원
- ⑥ 기본급 8항 및 9항을 적용받는 자에게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기상여금을 시간비례 없이 연 300,000원 지급한다.
- ⑦ 다문화언어강사(서울): 연 500,000원

【가족수당】 수상안전요원(경남)의 가족수당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공무원 지급기준 및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영어체험전담센터강사(경남의 무기계약직)·방과후학교실무원(경남)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지급한다.

② 대구 구육성회(호봉제)직원의 맞춤형복지비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연 550,000원으로 인상하되, 연 5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행 을 유지한다.

【직종 관련 수당】

① 영양사의 면허가산수당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기본급의 5%로 한다.

② 구육성회(호봉제)의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9급과 동일 적용한다.

③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충남, 경북, 경남에서 호봉제(사무)행정실무사를 대체하여 채용되어, 행정실에서만 근무하며 구육성회 호봉제(사무)행정실무사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일몰제로 운영되는 월급제(사무)행정실무사(경남은 월급제 구육성회)에게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2022년 회계연도부터 월 50,000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경남의 관리수당은 폐지하고 세종의 행정실무수당은 그 명칭을 특수업무수당으로 변경한다. 또한 전북의 사무실무사는 전보 및 인사교류 시부터 지급한다.

④ 시설기동보수반(서울)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학교 순회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해 2022년 회계연도부터 직무수당을 기존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2. 협약 체결월 이후 지급되는 임금보전금은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금액 산정 시 근속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자에게 근속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부칙]

1. 2020년 집단임금협약의 복지3종(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기준금액을 지급받던 직종의 복지 3종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의 복지 3종 인상액을 적용한다.
2.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2018년 임금협약을 존중한다.
3. 단시간 통학차량보호탑승자(경남)는 본 협약을 2022.3.1.부터 적용하고,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유치원방과후 전담사의 유형 편입을 제외한 처우개선에 대해 단체(임금)교섭과 별도로 협의한다.
5.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
6.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확보 후에 지급한다.
7. 본 협약은 체결일 현재 재직자에게 적용한다.
8.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2.8.31.까지로 한다.

※ 단, 근속수당 및 명절휴가비 인상분은 잠정합의일(2022.1.28.)이 속한 월부터 [공통] 사항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022. 2. 14.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 엄진섭 (인) 엄진섭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이윤희 (인) 이윤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인) 전종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인) 최순임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과장 한동인 (인) 한동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인) 박미향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안전과장 한성식 (인) 한성식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인) 김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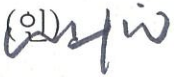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동정책과장 정은남 (인) 정은남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과장 우창영 (인) 우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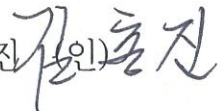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인) 이철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인) 김현숙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사협력과장 나 의 신 (인)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사법무과장 김 홍 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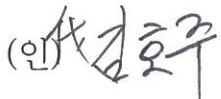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사협력과장 안 치 동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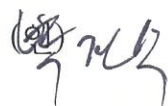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과장 명 노 병 (인)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과장 김 형 기 (인) 

전라남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사정책과장 박 진 수 (인)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교지원과장 이 상 국 (인)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노사협력과장 지 계 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은

총무과장 강 동 선 (인) 